

**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공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58호, 2016.12.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12.30.)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183호, 2012.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 서비스 제공명 : 산소치료서비스

2. 서비스 목적

만성심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 또는 가정 외에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서비스 내용

가. 서비스 범위

1)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법”(보건복지부고시 2016-258호, 2016.12.30.) (이하 “요양비고시”라 한다.) 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의한다.

나. 서비스 절차

1)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고시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임차하여 가정 또는 가정 외에서도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2) 이 경우,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비고시 별표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가정 또는 가정 외에서도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입자 등은 요양비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 치료)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 금액

1)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소치료서비스의 기준금액 (유지·보수시 소요된 재료비, 소모품 등 제반비용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한다.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2) “1)”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산소치료서비스 금액은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최고금액 이내로 한다.

구분	가정용	휴대용
최고금액	16만원/월	24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최고금액은 12만원/월로 한다.

※ 단, 공단은 환자 1인에 대해 대여업소 수, 산소발생기 임차대수, 계약 건수 등과 관계없이 월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함에 유의

3) “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고시 별표2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산소치료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가입자 등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라. 서비스 금액별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

##### ○ 가정용 산소발생기

1)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비기준

- 순도 : 90%이상
- 소음 : 45dB 이하
- 소비전력 : 300W 이하
- 경보기능(1가지 이상) :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등

##### 나) 서비스 내용

- 업소는 4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점검하여야 한다.

2)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고금액(16만원/월)미만에 해당하는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비기준

- 순도 : 90% 이상
- 소음 : 35dB ~ 45dB 미만
- 소비전력 : 250W ~ 300W 미만
- 경보기능(2가지 이상) :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등

나) 서비스 내용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점검하고 4개 이상 직영영업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최고금액(16만원/월)미만에 해당하는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기준

- 순도 : 90% 이상
- 소음 : 35dB 이하
- 소비전력 : 250W 이하
- 경보기능(3가지 이상) :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등

나) 서비스 내용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점검하고 6개 이상 직영영업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

1)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기준

- 순도 : 90% 이상
- 소음 : 60dB 이하
- 모드 : 흡입모드
- 경보기능 : 기기고장, 배터리잔량, 호흡수이상감지, 호흡미감지 중 1가지 이상

나) 서비스 내용

- 업소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점검하여야 한다.

2) 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최고금액(24만원/월)미만에 해당하는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기준

- 순도 : 90% 이상
- 소음 : 60dB 이하
- 모드 : 연속모드

- 경보기능 : 기기고장, 산소농도, 배터리잔량, 호흡수이상감지, 호흡미감지 중 2가지 이상

나) 서비스 내용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점검하고 4개 이상 직영영업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서비스 금액별 장비 및 서비스 내용

① 가정용 산소발생기

구분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순도	소음	소비전력	경보기능	정기방문	직영영업소
1)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금액(12만원/월)	90%이상	45dB이하	300W이하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중 1가지 이상	4개월마다 1회 이상	3개 이하
2)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최고금액(16만원/월) 미만	90%이상	35dB초과 ~ 45dB미만	250W초과 ~ 300W미만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중 2가지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4개 이상
2)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최고 금액(16만원/월)	90%이상	35dB이하	250W이하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압력) 중 3가지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6개 이상

※ 장비기준과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당해 업소에서 임대하는 기기의 서비스 금액은 적은 쪽의 서비스 금액(본인부담금 포함)을 적용한다.

② 휴대용 산소발생기

구분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순도	소음	모드	경보기능	정기방문	직영영업소
1)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금액(20만원/월)	90% 이상	60dB이하	흡입모드	기기고장, 배터리 잔량, 호흡수이상감지, 호흡미감지 중 1가지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3개 이하
2)요양비고시 별표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고 금액 이하(24만원/월)	90% 이상	60dB이하	연속모드	기기고장, 산소농도, 배터리 잔량, 호흡수 이상감지, 호흡미감지 중 2가지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4개 이상

4) 요양비고시 별표2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서 제시된 서비스 기준 중 “전국적인 조직망”이라 함은 직영 영업소를 다음과 같은 권역별로 설치·운영함을 말한다. 다만, 요양비고시 별표2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서 제시된 서비스 기준 중 전국적인 조직망(직영영업소)이 3개 이하인 등록업소는 업소 및 직영

영업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영업지역을 제한한다.

- 가) 서울·경인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나) 강원권 : 강원도
- 다) 충남·충북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라) 전남·전북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마) 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바) 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 서비스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365일 24시간 콜센터
  - 콜센터 등 확실한 대응자가 있고, 관련된 담당자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 불인정)
- 나) 성능검사 장비 보유 기준
  - 각 업소는 산소농도계, 산소유량계, 소비전력계, 의료용 소독제 및 산소발생기 청소를 위한 콤프레셔를 보유하여야 한다.
- 다) 산소발생기 보관 장소 기준
  - 산소발생기는 의료용 호흡보조기구로서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업소는 별도의 청결한 장소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 정비 및 성능검사 실시
  - 각 업소는 장비 설치 전 반드시 상태, 성능의 기기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성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마) 기기 소재·이력관리
  - 확실한 점검과 이용 불편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전시의 즉각 대응을 위한 기기 소재·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공통사항

- 가) “서비스 금액별 장비기준 및 서비스 내용”에서 규정한 서비스기준 이외의 적용 사항은 요양비고시 별표2의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서 정한 제1호 가목 2) 내지 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에 의한다.
  - 각 업소는 방문점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장비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 장비 등록 신청 시 해당 장비의 제조년월 및 일련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각 업소의 영업지역은 기기 사용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감안하여 최초 기기 임대지역의 업소에서 1회(6개월 이내)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

#### 4. 등록·변경 신청, 등록취소 등

##### 가. 등록신청

요양비고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기재하여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변경신청

요양비고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의 일반현황·장비 및 서비스 기준, 서비스금액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등록취소

공단은 요양비고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요양비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등록증 발급

공단은 등록 신청한 업소가 요양비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영업지역을 명시하여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5. 사후관리 등

공단이사장은 요양비고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확인 조사·점검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장비기준 및 서비스 내용범위로 서비스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등록된 경우

나. 공단에 등록된 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라. 공단에 등록된 서비스금액별 범위(장비기준과 서비스내용 등)와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마. 산소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기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6. 산소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가 고시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소별 장비기준, 서비스내용 및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